

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8 -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5나11939 손해배상(저)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11. 7. 선고 2024가단5454593 판결

변 론 종 결 2026. 7. 10.

판 결 선 고 2026. 8. 21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원고 :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 :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위 치	제1심판결 기재	이 법원 기재
5면 11~12행	저작권법	구 저작권법(2026. 2. 10.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7면 8행	갑 제8 내지	갑 제7 내지
7면 13행~17행	④ 원고는 ~ 보이는 점,	④ 위 ②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아동복 매출로 입금된 금액이 1억 1,900만 원 정도인데,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유아동 사이에서 큰 인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



		중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한 매출일 것으로 보이는 점, ④-1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 거래에 AS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는데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,
--	--	--

2. 결론

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영희

판사 정인재

판사 김기현